
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기타(정보공개)
원고	□□□	피고	인천광역시◇◇교육지원청교육장
판결선고일	[1심]2020. 5. 14. 원고패소	비고	
사건개요	<p>○ 피고는 2018. 3. 11. ○○○로부터 인천◇◇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[정기감사 및 특별감사]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받았고, 피고는 2018. 3. 20. 3년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, 수사재판중인 유치원은 감사결과가 없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치원 및 원장 실명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함.</p> <p>○ ○○○는 2018. 5. 31.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(사건 번호: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○○○○○호) 피고가 패소하여 2019. 4. 24.에 확정됨.</p> <p>○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2019. 4. 29. 관내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및 원장명 부분의 공개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유치원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하였고, 2019. 5. 15.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명 및 원장명에 대하여 2019. 6. 17.자로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함.</p> <p>○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며,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판결이유	<p>○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</p> <p>- 이 사건 정보는 ‘피고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했던 유치원 중 재판 중인 유치원의 유치원명 및 원장실명’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및 그 원장인 원고의 실명에 불과하고, 그 감사나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자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라거나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</p> <p>○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</p> <p>- 이 사건 각 정보 중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나아가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실명 부분에 관하여 본다. 이 사건 정보는 ‘피고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했던 유치원 중 재판 중인 유치원의 유치원명 및 원장실명’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및 그 원장인 원고의 실명에 불과하고, 그 감사나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</p>		

	<p>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공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보다 더 우월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‘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’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</p> <p>○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 위배 여부</p> <p>-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</p>
<p>결 론</p>	<p>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